2025년 2분기 비상기획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림

□ 관련근거

- ㅇ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 제1항
- o 北. 쓰레기풍선 살포 피해지원 협조 요청(행안부 민방위과-2105. '24.6.11.)
 - 쓰레기풍선 살포로 피해발생함에 따라 입법 전까지 예비비 활용 신속 지원 협조 요청
- o 市 감사위원회 컨설팅 실시 ('24.6.13. 민방위담당관 의뢰→24.6.19. 감사담당관 회신)
 - (6.13. 의뢰)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재난안전법」 취지를 근거로 적극적·선제적 피해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
 - (6.19. 원안통과) 공익 및 적극행정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원 타당성 인용 결정

□ 예비비 사용내역 : 28건, 29백만원

- ※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예비비를 배정 받아 집행함
- o 세부사업명 : 북 쓰레기 풍선 피해지원 (3~4차)
 - '24.5월부터 北 쓰레기풍선 지속 살포로 인해 시민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, 대통령실 지시 및 행정 안전부에서 예비비 등 자체예산을 활용한 신속한 피해지원 협조 요청함.
 ** 행정안전부 민방위과-2105(2024.6.11.)호
 - 市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을 통해 「민방위기본법」,「재난안전법」을 근거로 적극적・선제적 피해지원이 가능함을 인용 의결 받아, 피해접수, 피해조사반,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방침서 수립 및 지원절차 시행함.

- '24.11~12월 차량, 건물, 상해 등 피해 총 28건에 대하여 3~4차 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, 지원 타당성 심의 후 예비비를 지급함.
 - 北 쓰레기풍선 피해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시민피해를 지원하였음.

(단위:천원)

예 산 과 목					지출일	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지출액	(비고)	비고
소 계				29,543,560		
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	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	북 쓰레기풍선 피해지원	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	20,873,240	`24.11.28	제3차 17건 지원
				8,670,320	`24.12.16	제4차 11건 지원

※「민방위기본법」일부 개정안 ('24.12.3. 공포 / '25.6.4. 시행) 시행 전까지 현행 지원 체계 유지 및 향후 동법 시행령 기준절차(법제처 심사 중)에 맞춰 피해 지원코자함

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: 류대창 ☎ 2133-4505 비상기획팀장 : 김숙자 ☎ 4507 담당 : 주아람 ☎ 4531